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. 6. 30 선고 2016가합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 2016. 6. 23.

판결 선고 2016. 6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들에게, 포항시 북구 E 대 1,416.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건물 350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판사정재우

판사지충현

판사양진호

별지